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등기번호	003983										
등록번호	171711-0039832										
상 호 -	· 주식회사 미래세라텍		변경 등기								
	주식회사 미래세라텍	(MIRAE CERATEC CO.,LTD.)	<u>2022.03.31</u> 변경 2022.04.11 등기								
본 점 🗦	본 점 포항시 남구 청림동 1-143										
	포 항시 북구 청하면 하대리 559-1										
7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² 청하면 동해대로2315번길 54-6	2011.10.31 도로 명주소 2013.07.15 등기								
공고방법	포항시내에서 발행	하는 일간 신경북일보에 개재한다.	변경 등기								
	재한다.다만,전산정	님은 인터넷홈페이지(http://www.mrct.co.kr)에 개 상에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자 때에는 포항시내에서 발행하는 일간 경북일보에 개	2018.03.31 변경 2018.04.04 등기								
	kr/)를 통한 전자공 부득이한 사유로	i은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rct.co. 공고 방법으로 한다. 다만, 전산장에 또는 그 밖의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없는 때에는 생하는 일간 경북일보에 개재한다.	2021.03.31 변경 2021.04.23 등기								
	한 전자공고 방법으 사유로 회사의 인터	니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rct.co.kr/)를 통으로 한다.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너넷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없는 때에는 서울특별시 나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한다.에 게제한다	2022.03.31 변경 2022.04.11 등기								
1주의 금액	금 10,000 원		변경 등기								
발행할 주	식의 총수 _{20,000} 즉	<u> </u>	· . 변경 · . 등기								
	100,000	~~~~~~~~~~~~~~~~~~~~~~~~~~~~~~~~~~~~~	2004.12.13 변경 2004.12.21 등기								
	10,000,0	2021 03 31									

1/16

열람일시 : 2024년09월05일 09시49분32초

003983

5 , 2			
			2021.04.23 등기
발행주식의 총수	와	자본금의 액	변 경 연 월 일
그 종류 및 각각의		시 <u>단</u> 합기 ㅋ 	등 기 연 월 일
발행주식의 총수	15,000 주		2001.04.03 변경
보통주식	15,000 주	금 150,000,000 원	2001.04.03 등기
발행주식의 총수	30,000 주	7	2004.12.18 변경
보통주식	30,000 7	금 300,000,000 원	2004.12.21 등기
발행주식의 총수	36,818 주	7 000 100 000 0	2021.04.23 변경
보통주식 바레즈사이 호스	36,818 주	금 368,180,000 원	2021.05.11 등기
발행주식의 총수 보통주식	62,000 주 		2022.06.18 변경
보통구역 전환상환우선주식	25, 182 7	그 620 000 000 영	2022.06.24 등기
<u> 건원 6월 1 십 1 년</u> 발행주식의 총수	67,925 7	금 620,000,000 원	2022.06.21 변경
보통주식 - 보통주식	42,743 주		2022.06.30 등기
포 6 기 기 전환상환우선주식	25, 182 주	금 679,250,000 원	2022.00.00 67
발행주식의 총수	75,331 주	р 0,0,200,000 д	2022.07.14 변경
보통주식	42,743 주		2022.07.26 등기
전환상환우선주식	32,588 주	금 753,310,000 원	
	목	 적	•
 1. 세라믹 제품 제조 및 판매업	•	역 <2022.03.31 삭제	2022.04.11 등기>
2. 내화물 제조 및 판매업		<2022.03.31 국제 <2022.03.31 삭제	2022.04.11 등기>
3. 기술용역		<2021.03.31 삭제	2021.04.23 등기>
4. 위 각호에 관련되는 부대사 의	<u> 일체</u>	<2021.03.31 삭제	2021.04.23 등기>
3. 2차전지 양극재 소성용기(Bo			
		<2021.03.31 추가	2021.04.23 등기>
		<2022.03.31 삭제	2022.04.11 등기>
4. 기술용역		<2021.03.31 추가	2021.04.23 등기>
		<2022.03.31 삭제	2022.04.11 등기>
5. 위 각호에 관련되는 부대사약	법 일체	<2021.03.31 추가	2021.04.23 등기>
		<2022.03.31 삭제	2022.04.11 등기>
1.세라믹 제품 개발, 제조, 판미		<2022.03.31 추가	2022.04.11 등기>
2.내화물 제품 개발, 제조, 판매		<2022.03.31 추가	2022.04.11 등기>
3.전기, 전자, 기계, 화학 등의	산업재 및 소비재의		0000 04 11 = -1
4 제1주 내기 제0주 되다 제표	T 선 선	<2022.03.31 추가	2022.04.11 등기>
4.제1호 내지 제3호 관련 제품	구역입	<2022.03.31 추가	2022.04.11 등기>
5.시설, 장비 임대업		<2022.03.31 추가	2022.04.11 등기>
6.부동산 매매업 및 개발사업 7.부동산 임대업 및 전대업		<2022.03.31 추가 <2022.03.31 추가	2022.04.11 등기> 2022.04.11 등기>
7.구중산 임대업 및 신대업 8.기술용역, 경영자문 및 컨설팅	티어	<2022.03.31 구가 <2022.03.31 추가	2022.04.11 등기>
6.기물용식, 경영사군 및 신설식 9.전자상거래업 및 인터넷 관련		<2022.03.31 추가	2022.04.11 등기>
5.선사경기네함 못 한다깃 선언 10 이 가능해 코려디 브레지어		~2022.03.31	2022.04.11 5//

10.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2022.03.31 추가 2022.04.11 등기>

등기번호	003983		
		<2023.03.31 삭제 2023.04.17	등기>
10.태양력	발전업	<2023.03.31 추가 2023.04.17	등기>
11.위 각호	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2023.03.31 추가 2023.04.17	등기>

```
임원에 관한 사항
이사 김성현 551207-*****
                                    04 월
   2003 년
          03 월
                28 일
                      중임
                             2003 년
                                         01 일
                                                등기
                      중임
                                    05 월
                                          09 일
   2006 년
          03 월
                31 일
                             2006 년
                                                등기
사내이사 김성현 551207-*****
   2009 년
          03 월
                26 일
                             2009 년
                                    03 월
                                          30
                                            일
                                                등기
          03 월
                      중임
                                                등기
   2012 년
                26 일
                             2012 년
                                    03 월
                                          28 일
   2015 년
          03 월
                26 일
                      중임
                             2015 년
                                    03 월
                                          27 일
                                                등기
                      중임
   2018 년
          03 월
                31 일
                             2018 년
                                                등기
                                    04 월
                                          04 일
   2020 년
          11 월
                09 일
                      사임
                             2020 년
                                    11 월
                                          11 일
                                                등기
대표이시 김성현 551207-****** 포항시 북구 두호동 1074 산호녹원맨션 101-907
대표이사 김성현 551207-****** 포항시 북구 두호동 753 우방신천지 102-603
          02 월
                28 일
                      주소변경
                                2002 년 03 월
                                            15 일 등기
   2002 년
   2003 년
          03 월
                28 일
                      중임
                             2003 년
                                    04 월
                                          01 일
                                                등기
          03 월
                31 일
                      중임
                             2006 년
   2006 년
                                    05 월
                                          09 일
                                                등기
   2009 년 03 월
                26 일
                     중임
                                                등기
                             2009 년
                                    03 월 30 일
대표이시 김성현 551207-******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새천년대로1020번길 12. 102-603(두호동.
우방신천지타운)
   2012 년 03 월
               26 일 중임
                             2012 년 03 월 28 일 등기
대표이사 김성현 551207-******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천마로90번길 11, 204동 1304호(양덕동, 양
덕2차이-편한세상)
   2015 년
         03 월
                11 일
                      주소변경
                                2015 년 03 월
                                             27 일 등기
                                    03 월
   2015 년
          03 월
                26 일
                      중임
                             2015 년
                                          27 일 등기
                      중임
   2018 년
          03 월
                31 일
                             2018 년
                                    04 월
                                          04 일
                                                등기
   2020 년
          11 월
                09 일
                      사임
                             2020 년
                                    11 월
                                          11 일
                                                등기
이시 홍복희 590927
                21 일
                      취임
                             2001 년
                                    04 월
                                          03 일
                                                등기
   2001 년
          03 월
   2004 년
          03 월
                31 일
                      중임
                             2004 년
                                    04 월
                                          01 일
                                                등기
          03 월
                22 일
                      중임
                             2007 년
                                    03 월
                                          27 일
                                                등기
   2007 년
사내이사 홍복희 590927-
                  *****
                      중임
   2010 년
          03 월
                31 일
                             2010 년
                                    04 월
                                          02 일
                                                등기
   2013 년
                                                등기
          03 월
                31 일
                      중임
                             2013 년
                                    04 월
                                          01 일
   2016 년
          03 월
                31 일
                      중임
                             2016 년
                                    03 월
                                          31 일
                                                등기
   2018 년
          03 월
                31 일
                      사임
                             2018 년
                                    04 월
                                          04 일
                                                등기
이사 이삼용 311215
               *****
                             2001 년
          03 월
                21 일
                      취임
                                    04 월
                                          03 일
                                                등기
   2001 년
   2004 년
          03 월
                31 일
                      중임
                             2004 년
                                    04 월
                                          01 일
                                                등기
          03 월
                22 일
                     중임
                                          27 일
   2007 년
                             2007 년
                                    03 월
                                                등기
사내이시 이삼용 311215-*****
```

등기번호		0039	983										
2010 \	<u>년</u> 03	원	31	<u>이</u> .	<u> </u> 중임	2010	녆	04	원	02	힐	등기	
2013 H			31		_{8 日} 중임	2013		04		01		등기	
2015 k			01		사임	2015		10		12		등기	
감사 이정선													
2001 님	크 03	월	21	일	취임	2001	년	04	월	03	일	등기	
2004 년	<u>력</u> 03	월	31	일	중임	2004	년	04	월	01	일	등기	
2007 년	<u>력</u> 03	월	22	일	중임	2007	년	03	월	27	일	등기	
2010 님		_	31		중임	2010	년	04		02	일	등기	
2013 님			31		중임	2013		04		01		등기	
2016 년			31		중임	2016		03		31		등기	
2018 년				일 /		2018	년	04	월	04	일	등기	
사내이사 •						2015		4.0	٨١	4.0	۸1	г,	
2015 \f				일 :		2015		10				등기	
2018 \				일 /		2018	년	04	철	04	일	등기	
<u>사내이사</u> 중						2010	1.3	0.4	୍ରୀ	0.4	റി	ヒッ	
2018 \cdot 2019 \cdot \cdot \cdot \cdot 2019 \cdot \cd			31		취임 사임	2018		04 01		04 14		등기 등기	
2019 원 사비이사 0					<i>/</i>	2020	던	UI	''''	14	豆	<u> </u>	
2018 \					취임	2018	너	04	위	04	0]	등기	
2020 k					. –	2020		11		11		등기	
사내이사 •						2020			프			0/1	
2018 \			31		취임	2018	녆	04	월	04	일	등기	
2020 님				일 /		2020		11		11		등기	
사내이사 7	김윤열	6608	310-	****	***			- '	1			\rightarrow	
2018 님	<u>력</u> 03	월	31	일	취임	2018	년	04	월	04	일	등기	
2020 년	<u>크</u> 11	월	09	일	사임	2020	년	11	월	11	일	등기	
사내이사 7					***			_	L				
2020 님			02		취임	2020		09			_	등기	
2023 년					임기만료		2023	년	09	월	26	일	등기
사내이사 7													
2020 년												등기	
2021 년						2021	년	09	월	30	일	등기	
사내이사 7						0000	٠,٠	00	ó١	00	ΔÌ	ㄷ~)	
2020 \												등기	
2023 년					임기만료		<u> 2023</u>	넌	- 09	펄	26	일	<u>5/I</u>
2020 년						2020	녆	Ω	위	Λo	61	등기	
2020 원 2020 원						2020					일		
													115동 1702호(케이씨씨스위첸
아파트)	u (1)	1000	,10		0/1	Ľ	0.1	0 -	<u></u> Н	0 -		100,	
2020 \	a 11	월	09	일	취임	2020	녆	11	월	11	일	등기	
2021 년						2021						등기	

등기번호	003	3983									
사내이사 7	사내이사 김기웅 660830-*****										
2020 님	년 12 월	02 일	취임	2020 년	12 월	09 일	등기				
2023 է	년 12 월	02 일	중임	2023 년	12 월	12 일	등기				
감사 박진희	690320-	*****	_								
2020 է	년 12 월	02 일	취임	2020 년	12 월	09 일	등기				
2023 է		_	중임	2023 년	04 월	17 일					
2023 է	년 12 월	31 일	사임	2024 년	01 월	02 일	등기				
대표이사 7	일범주 710)814 - ***	**** 경기	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	27번길	14-30, 605동 1502호(죽전동			
, 꽃메마을	한라신영국	프로방스)								
2021 է	년 07 월	24 일	취임	2021 년	07 월	30 일	등기				
	년 09 월			2023 년	09 월	26 일	등기				
사외이사 7	김석주 751	222-***	****								
	년 08 월			2021 년	09 월	15 일	등기				
사외이사 현	함우승 880)129-***	****								
	년 07 월			2022 년	08 월	02 일	등기				
사내이사 7	김범주 710	814-**	****								
2023 է	크 09 월	21 일	취임	2023 년	09 월	26 일	등기				
사내이사 7	김인국 690	0616-***	****								
2023 է	년 09 월	21 일	취임	2023 년	09 월	26 일	등기				
대표이사 7	김범주 710	814-***	**** 경기	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	27번길	14-30, 605동 1502호(죽전동			
, 꽃메마을	한라신영국	프로방스)								
2023 է	년 09 월	21 일	취임	2023 년	09 월	26 일	등기				

종류주식의 내용

전환상환우선주식

< 의결권에 관한 사항 >

- ①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는 주식 일주당 보통주와 동일하게 일개의 의결권을 갖는다. 보통주로 전환되는 경우 전환 후의 보통주식은 일주당 일개의 의결권을 갖는다.
- ② 본건 우선주식에 불리한 주주총회 결의 등이 있는 때에는 전체 주주총회와 별도로 그 안건에 대하여 본건 우선주식의 종류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 ③ 본건 우선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년으로 하고, 존속기간내에 보통주로 전환되지 아니한 경우 존속기간 만료 다음날 자동적으로 보통주로 전환된다.
- < 배당에 있어서 우선권에 관한 사항 >
- ① 본건 우선주식은 참가적, 누적적 우선주로 인수인은 본건 우선주식을 보유하는 동안 1주당 액면가액 기준 연[1]%의 배당을 누적적으로 우선 배당 받고, 보통주의 배당률이 우선주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보통주와 동일한 배당률로 함께 참가하여 배당 받는다.
- ② 주식배당의 경우, 우선주와 보통주를 합한 발행주식총수에 대한 비율에 따라, 같은 종류의 우선주 주식으로 배당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다만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받는다.
- ③ 이익배당과 관련하여 본건 우선주식의 인수인은 본건 우선주식의 효력발생일이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 말에 주주가 되는 것으로 본다. 배당금의 지급시기를 주주총회에서

003983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 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의 승인 및 배당결의가 있은 날로부터[1]개월 이내에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④ 본건 우선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전환권이 행사된 경우, 전환된 주식에 대하여 전환 전까지의 기간 동안 배당 결의되었으나 그 배당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였다면 동 미지급 배당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사가 당해 주식의 주주에게 별도로 지급하기로 한다.
- ⑤ 본 조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정관에 정함이 있고 투자자의 서면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회사는 서면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 영업일 이내에 상법 제 449조의2, 상법 제 462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사회결의로 재무제표 승인과 이익배당을 하여야 한다.
- < 청산 잔여재산 분배에 있어서 우선권에 관한 사항 >
- ① 회사가 청산에 의하여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경우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는 주당 발행가액 및 이에 대하여 연복리 12%의 비율로 산정한 금액을 합한 금원에 대하여 보통주식 주주에 우선하여 잔여재산을 분배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청산 이전까지 미지급 배당금이 있는 경우 동 금원에 대하여도 동일하다.
- ② 본건 우선주식에 대한 우선 분배를 한 후 보통주에 대한 주당 분배금액이 본건 우선주식에 대한 주당 분배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는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보통주의 주주와 동일한 분배율로 함께 참가하여 잔여재산을 분배 받을 권리가 있다. < 전환권에 관한 사항 >
- ① 전환기간: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회사는 전환청구권을 보유하지 아니한다)는 그 거래완 결일의 다음날부터 [10]년 경과일 전일까지 언제든지 본건 우선주식을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 ② 전환절차는 다음과 같다.
- 1. 투자자는 전환청구서에 전환하고자 하는 주식의 종류, 수, 청구연월일을 기재하여 기명 또는 서명날인하고 주권이 발행된 경우 주권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한다.
- 2. 전환은 투자자의 제1호의 전환청구서 또는 전환될 본건 우선주식의 주권이 제출된 날짜의 영업시간 종료 직전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 3. 투자자가 전환에 의하여 보통주식을 부여 받게 되는 경우 상기 제2호의 날짜를 기준으로 주주명부상의 주주로 간주된다.
- 4. 회사는 전환청구서 또는 전환될 본건 우선주식의 주권을 인도받은 즉시 당해 우선주식의 주주에게 그가 부여 받을 권리가 있는 수만큼의 보통주식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여 인도하는 등 주식 발행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 ③ 전환비율은 다음과 같다.
- 1. 본건 우선주식의 보통주로의 전환비율은 우선주 1주당 보통주 1주로 한다.
- 2. 회사의 IPO 공모단가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그 당시의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경우는 전환비율을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 조정 후 우선주 1주당 전환하는 보통주의 수 = 조정 전 우선주 1주당 전환되는 보통주의 수 × 조정 전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가격 / 회사의 IPO 공모단가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 3. 회사가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 전에 그 당시의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발행가격으로 유상증자 또는 주식관련사채(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및 기타 주식으로 전환될수 있는 종류의 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전환가격은 그 하회하는 발행가격으로 조정한다. 단, 회사가 2021. 5. 28. 자로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이 본건 우선주식의 발행 후부터 전환 전 사이에 행사됨에 따라 회사가 발행하는 신주 발행가격이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가격을 하회하더라도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가격을 조정하지 아니한다.

003983

- 4. 본건 우선주식의 발행 이후 주식배당, 무상증자 등으로 인해 발행주식수가 증가하는 경우 .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는 회사로부터 주주가 보유한 신주와 같은 조건 및 종류의 우선 주식으로 무상지급을 받도록 하되 아래의 수식을 따른다.
- $Ni = Bi \times \{(Ac/Bc)-1\}$
- Ni :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에게 무상지급 되는 우선주식수
- Bi : 발행 전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 보유 우선주식수
- Bc : 발행 전 회사 발행주식총수 (우선주와 보통주를 합한)
- Ac : 발행 후 회사 발행주식총수 (우선주와 보통주를 합한)
- 5. 회사가 다른 법인과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을 통하여 기업결합을 하거나(주권상장 법인과의 기업결합은 제외한다) 피인수(회사의 신규 주식 및 주식연계증권의 발행, 회사나 주 주가 보유하는 기존 주식 및 주식연계증권을 포함한 매매, 또는 양자가 결합된 동시 또는 순 차의 거래로 인하여 회사의 경영권 이전의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 등을 포함)되는 경우, 거래 단가 또는 교환비율 산정을 위한 주식평가액(이하 "거래단가 등")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본건 종류주식의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경우, 본건 종류주식의 전환가액을 거래단가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조정한다.
- 6. 회사의 주식을 분할 또는 병합하는 경우 전환비율은 그 분할 또는 병합의 비율에 따라 조정된다. 단주의 평가는 주식의 분할 또는 병합 당시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 7. 회사가 전환 전에 무상감자를 할 경우에는 전환비율은 그 감자의 비율에 따라 조정한다. 단, 경영과실 등의 사유로 특정 주주에 대해서만 차등적으로 무상감자를 하는 경우는 전환비 율을 조정하지 않기로 한다.
- ④ 미발행 수권주식의 유보: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청구기간 만료시까지 회사가 발행할 수권주식의 총수에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으로 발행가능한 주식수를 유보한다.
- ⑤ 전환주식의 발행, 전환의 청구, 기타 전환에 관한 사항은 상법 제346조 내지 제351조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전환권을 행사한 우선주 및 전환으로 발행된 신주의 배당에 관하여는 그청구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 영업 연도 말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 상환권에 관한 사항 >

- ①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회사는 상환청구권을 보유하지 아니한다)는 본건 우선주식의 발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회사에 대하여 본 조에 따라 본건 우선주식의 전부 또는일부의 상환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회사는 상환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상법 제462조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 이를 상환하여야 한다.
- ② 회사 및 이해관계인은 제1항의 상환 재원을 위하여 준비금 감소 등 법률상 가능한 절차 를 신속히 이행하여야 한다.
- ③ 1주당 상환가액은 본건 우선주식의 1주당 발행가액과 이에 대한 거래완결일의 다음날부터 상환일까지 연복리 (8)%를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되 본건 우선주식 발행일부터 상환일까지 지급된 배당금이 있을 경우 차감하여 계산하기로 한다.
- ④ 투자자의 상환권 행사 이후, 본건 우선주식의 상환에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상환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제2항의 절차가 가능함에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회사와 이해관계인은 함께 제1항의 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위약벌로써 투자자에게 지급하여야한다.
- ⑤ 기한 전 상환 :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003983

서 정한 상환조건과 별개로 회사에 대해 본건 우선주식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1. 거래완결일 이후 주금의 가장납입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중요 자산을 사업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유출시킨 경우
- 2. 본건 우선주식 발행 및 인수 관련 계약에서 정한 회사의 진술과 보장이 허위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
- 3. 거래완결일 이후 상법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의 제반 법규를 위반하여 회사가 본 계약의 내용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 4. 회사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적정이 아닌,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일 경우
- 5. 기타 회사의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불가능해진 경우
- 6. 회사 또는 이해관계인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 <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

본건 우선주식은 보통주와 동등한 신주인수권이 있으며,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우선주로,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회사가 발행키로 한 종류의 주식으로 배정받을 권리가 있다.

2022 년 06 월 18 일 설정 2022 년 06 월 24 일 등기

전환상환우선주식

< 의결권에 관한 사항 >

- ①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는 주식 일주당 보통주와 동일하게 일개의 의결권을 갖는다. 보통주로 전환되는 경우 전환 후의 보통주식은 일주당 일개의 의결권을 갖는다.
- ② 본건 우선주식에 불리한 주주총회 결의 등이 있는 때에는 전체 주주총회와 별도로 그 안건에 대하여 본건 우선주식의 종류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 ③ 본건 우선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년으로 하고, 존속기간내에 보통주로 전환되지 아니한 경우 존속기간 만료 다음날 자동적으로 보통주로 전환된다.
- < 배당에 있어서 우선권에 관한 사항 >
- ① 본건 우선주식은 참가적, 누적적 우선주로 인수인은 본건 우선주식을 보유하는 동안 1주당 액면가액 기준 연[1]%의 배당을 누적적으로 우선 배당 받고, 보통주의 배당률이 우선주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보통주와 동일한 배당률로 함께 참가하여 배당 받는다.
- ② 주식배당의 경우, 우선주와 보통주를 합한 발행주식총수에 대한 비율에 따라, 같은 종류의 우선주 주식으로 배당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다만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받는다.
- ③ 이익배당과 관련하여 본건 우선주식의 인수인은 본건 우선주식의 효력발생일이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 말에 주주가 되는 것으로 본다. 배당금의 지급시기를 주주총회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 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의 승인 및 배당결의가 있은 날로부터[1]개월 이내에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④ 본건 우선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전환권이 행사된 경우, 전환된 주식에 대하여 전환 전까지의 기간 동안 배당 결의되었으나 그 배당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였다면 동 미지급 배당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사가 당해 주식의 주주에게 별도로 지급하기로 한다.
- ⑤ 본 조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정관에 정함이 있고 투자자의 서면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회사는 서면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 영업일 이내에 상법 제 449조의2, 상법 제 462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사회결의로 재무제표 승인과 이익배당을 하여야 한다.

003983

- < 청산 잔여재산 분배에 있어서 우선권에 관한 사항 >
- ① 회사가 청산에 의하여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경우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는 주당 발행가액 및 이에 대하여 연복리 12%의 비율로 산정한 금액을 합한 금원에 대하여 보통주식 주주에 우선하여 잔여재산을 분배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청산 이전까지 미지급 배당금이 있는 경우 동 금원에 대하여도 동일하다.
- ② 본건 우선주식에 대한 우선 분배를 한 후 보통주에 대한 주당 분배금액이 본건 우선주식에 대한 주당 분배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는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보통주의 주주와 동일한 분배율로 함께 참가하여 잔여재산을 분배 받을 권리가 있다.
- < 전환권에 관한 사항 >
- ① 전환기간: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회사는 전환청구권을 보유하지 아니한다)는 그 거래완 결일의 다음날부터 [10]년 경과일 전일까지 언제든지 본건 우선주식을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 ② 전환절차는 다음과 같다.
- 1. 투자자는 전환청구서에 전환하고자 하는 주식의 종류, 수, 청구연월일을 기재하여 기명 또는 서명날인하고 주권이 발행된 경우 주권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한다.
- 2. 전환은 투자자의 제1호의 전환청구서 또는 전환될 본건 우선주식의 주권이 제출된 날짜의 영업시간 종료 직전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 3. 투자자가 전환에 의하여 보통주식을 부여 받게 되는 경우 상기 제2호의 날짜를 기준으로 주주명부상의 주주로 간주된다.
- 4. 회사는 전환청구서 또는 전환될 본건 우선주식의 주권을 인도받은 즉시 당해 우선주식의 주주에게 그가 부여 받을 권리가 있는 수만큼의 보통주식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여 인도하는 등 주식 발행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 ③ 전화비율은 다음과 같다.
- 1. 본건 우선주식의 보통주로의 전환비율은 우선주 1주당 보통주 1주로 한다.
- 2. 회사의 IPO 공모단가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그 당시의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경우는 전환비율을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 조정 후 우선주 1주당 전환하는 보통주의 수 = 조정 전 우선주 1주당 전환되는 보통주의 수 × 조정 전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가격 / 회사의 IPO 공모단가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 3. 회사가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 전에 그 당시의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발행가격으로 유상증자 또는 주식관련사채(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및 기타 주식으로 전환될수 있는 종류의 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전환가격은 그 하회하는 발행가격으로 조정한다. 단, 회사가 2021. 5. 28. 자로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이 본건 우선주식의 발행 후부터 전환 전 사이에 행사됨에 따라 회사가 발행하는 신주 발행가격이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가격을 하회하더라도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가격을 조정하지 아니한다.
- 4. 본건 우선주식의 발행 이후 주식배당, 무상증자 등으로 인해 발행주식수가 증가하는 경우 .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는 회사로부터 주주가 보유한 신주와 같은 조건 및 종류의 우선 주식으로 무상지급을 받도록 하되 아래의 수식을 따른다.
- $Ni = Bi \times \{(Ac/Bc)-1\}$
- Ni :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에게 무상지급 되는 우선주식수
- Bi : 발행 전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 보유 우선주식수
- Bc : 발행 전 회사 발행주식총수 (우선주와 보통주를 합한)
- Ac : 발행 후 회사 발행주식총수 (우선주와 보통주를 합한)

003983

- 5. 회사가 다른 법인과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을 통하여 기업결합을 하거나(주권상장 법인과의 기업결합은 제외한다) 피인수(회사의 신규 주식 및 주식연계증권의 발행, 회사나 주 주가 보유하는 기존 주식 및 주식연계증권을 포함한 매매, 또는 양자가 결합된 동시 또는 순 차의 거래로 인하여 회사의 경영권 이전의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 등을 포함)되는 경우, 거래 단가 또는 교환비율 산정을 위한 주식평가액(이하 "거래단가 등")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본건 종류주식의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경우, 본건 종류주식의 전환가액을 거래단가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조정한다.
- 6. 회사의 주식을 분할 또는 병합하는 경우 전환비율은 그 분할 또는 병합의 비율에 따라 조정된다. 단주의 평가는 주식의 분할 또는 병합 당시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 7. 회사가 전환 전에 무상감자를 할 경우에는 전환비율은 그 감자의 비율에 따라 조정한다. 단, 경영과실 등의 사유로 특정 주주에 대해서만 차등적으로 무상감자를 하는 경우는 전환비 율을 조정하지 않기로 한다.
- ④ 미발행 수권주식의 유보: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청구기간 만료시까지 회사가 발행할 수권주식의 총수에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으로 발행가능한 주식수를 유보한다.
- ⑤ 전환주식의 발행, 전환의 청구, 기타 전환에 관한 사항은 상법 제346조 내지 제351조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전환권을 행사한 우선주 및 전환으로 발행된 신주의 배당에 관하여는 그청구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 영업 연도 말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 상환권에 관한 사항 >

- ①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회사는 상환청구권을 보유하지 아니한다)는 본건 우선주식의 발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회사에 대하여 본 조에 따라 본건 우선주식의 전부 또는일부의 상환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회사는 상환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상법 제462조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 이를 상환하여야 한다.
- ② 회사 및 이해관계인은 제1항의 상환 재원을 위하여 준비금 감소 등 법률상 가능한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여야 한다.
- ③ 1주당 상환가액은 본건 우선주식의 1주당 발행가액과 이에 대한 거래완결일의 다음날부터 상환일까지 연복리 (8)%를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되 본건 우선주식 발행일부터 상환일까지 지급된 배당금이 있을 경우 차감하여 계산하기로 한다.
- ④ 투자자의 상환권 행사 이후, 본건 우선주식의 상환에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상환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제2항의 절차가 가능함에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회사와 이해관계인은 함께 제1항의 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위약벌로써 투자자에게 지급하여야한다.
- ⑤ 기한 전 상환: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상환조건과 별개로 회사에 대해 본건 우선주식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1. 거래완결일 이후 주금의 가장납입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중요 자산을 사업목적 외의 용 도에 사용하거나 유출시킨 경우
- 2. 본건 우선주식 발행 및 인수 관련 계약에서 정한 회사의 진술과 보장이 허위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
- 3. 거래완결일 이후 상법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의 제반 법규를 위반하여 회사가 본 계약의 내용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003983

- 4. 회사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적정이 아닌,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일 경우
- 5. 기타 회사의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불가능해진 경우
- 6. 회사 또는 이해관계인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 <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

본건 우선주식은 보통주와 동등한 신주인수권이 있으며,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우선주로,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회사가 발행키로 한 종류의 주식으로 배정받을 권리가 있다.

2022 년 07 월 14 일 설정 2022 년 07 월 26 일 등기

기 타 사 항

1. 명의개서대리인

명의개서대리인의 상호 및 본점소재지

주식회사 국민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2가 9-1

2012 년 11 월 16 일 설치 2012 년 11 월 27 일 등기

2018 년 03 월 31 일 폐지 2018 년 04 월 04 일 등기

전 환 사 채

제1회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1. 전환사채의 총액 금1,250,000,000원
- 금500,000,000원(2매),금250,000,000원(1매) 1. 각 전환사채의 납입금액
- 금500,000,000원,금500,000,000원,금250,000,000원 1. 본 사채는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 1. 전환의 조건
 - *전환의 조건
 - (1) 전환비율 및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되는 주식의 수: 각 사채권면금액(2이상의 사채권으로 전환청구 시에는 그 권면금액의 합산금액)을 전환가액으로 나눈 주식수의 100%를 전환주식수로 하고 1주 미만의 단수주에 해당하는 금액은 현금으로 지급한다. 단, 사채권면금액의 일부에 대한 전환은 청구할 수 없다.
 - (2) 전환가액: 금 675,000원 (1주당 액면가액 10,000원)본 건 사채의 발행 이후 주식배당, 무상증자 등으로 인해 발행주식 수가 증가하는 경우 본 건 전환가액은 아래의 산식에 따라 조정한다
 -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x [{기발행주식수+(신발행주식수x 1주당발행가액/시가)}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 -기발행주식수 : 당해 조정 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 주식 총수
 - -시가: 발행회사의 주식이 상장되기 전까지는 제10.4조 전환가액 조정의 규정에 의한 행사가액으로 하되, 상장된 이후에는 당해 발행 가액산정의 기준이 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이론 권리락 주가(유상증자 시) 또는

11/16

003983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간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 * 전환가액 조정
- (1) 발행회사가(i) 종전의 행사가격(행사가격의 조정이 있었던 경우 조정된 행사가격을 의미하며, 이하 기준가)을 하회하는 발행가격으로 유상증자를 하거나, (ii) 기준가를 하회하는 전환가격 내지 행사가격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거나, (iii) 기준가를 하회하는 교환가격으로 주식교환을 하는 경우, 기준가를 하회하는 발행가격, 전환가격, 행사가격 또는 교환가격으로 행사가격을 조정하기로 한다. 본 항에 따른 행사가격의 조정일자는 유상증자의 경우 그에 따른 신주의 발행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의 경우 해당 사채의 발행일로 하며, 주식교환의 경우 주식교환의 효력발생일로 한다.
- (2) 발행회사가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주식을 발행하거나,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의 액면 등을 하는 경우, 당해 주식 발행,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의 액면 변경 등 직전에 본건 신주인수권이 행사되어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었더라면 당해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의 액면 변경 등 직후에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를 산출할 수 있는 가액 또는 그 주식수 이상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가액으로 행사가격을 조정한다, 본 항에 따른 행사가격의 조정일은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의 경우 그에 따른 신주의 발행일로,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의 변경 등의 경우에는 해당 기준일로하다.
- (3) 발행회사의 상장 시 확정된 공모가격의 70%가 상장 직전 기준가 보다 낮은 경우, 확정된 공모가격의 70%로 행사가격을 조정한다. 본 항에 따른 행사가격의 조정일은 발행회사의 상장에 따른 공모가격이 확정되는 날로 한다.
- (4) 위 항으로 의한 행사가격의 조정 후 행사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사하며, 조정후 행사가격이 보통주식의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보통주식의 액면가를 행사가격으로 한다.
- 1.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

기명식 보통주식

전환가액 금675,000원(1주당 액면가액 10,000원)

1. 전환청구기간

사채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사채의 만기일 1개월 전(2029년 04월 10일)까지로 한다. 2024 년 05월 10일 발행 2024년 05월 22일 등기

신 주 인 수 권 부 사 채

제1회 무기명식 사모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 1. 본사채는 신주인수권부사채임.
- 1. 주식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 총액 금 일백이십억(12,000,000,000)원
- 1.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금액

금 일십억(1,000,000,000)원권 10매,금삼억(300,000,000)원권 4매,금이억(200,000,000)원권 4매

1.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납입금액

금 일백억원(10,000,000,000)원,금 일십억(1,000,000,000원)원,금 일십억(1,000,000,000)원

- 1.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총액
 - 금 일백이십억(12,000,000,000)원
- 1.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내용 [신주인수권 행사가격]

003983

본건 신주인수권 행사로 발행되는 보통주식의 주당 발행가격(이하 "행사가격")은 금 오십만이 천사백칠십일(502,471)원(이하 "최초 행사가격")으로 하되, 아래에서 정한 바에 따라 행사가격이 조정되는 경우 그 조정된 금액으로 된다.

[신주인수권 행사가격의 조정]

- 1. 발행회사가 종전의 행사가격(행사가격의 조정이 있었던 경우 조정된 행사가격을 의미하며, 이하 "기준가")을 하회하는 발행가격으로 유상증자를 하거나, 기준가를 하회하는 전환가격 내지 행사가격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거나, 기준가를 하회하는 교환가격으로 주식교환을 하는 경우, 기준가를 하회하는 발행가격, 전환가격, 행사가격 또는 교환가격으로 행사가격을 조정하기로 한다. 본 항에 따른 행사가격의 조정일자는 유상증자의 경우 그에 따른 신주의 발행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의 경우 해당 사채의 발행일로 하며, 주식교환의 경우 주식교환의 효력발생일로 한다.
- 2. 발행회사가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주식을 발행하거나,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의 액면 등을 하는 경우, 당해 주식 발행,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의 액면 변경 등 직전에 본건 신주인수권이 행사되어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었더라면 당해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의 액면 변경 등 직후에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를 산출할 수 있는 가액 또는 그 주식수 이상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가액으로 행사가격을 조정한다. 본 항에 따른 행사가격의 조정일은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의 경우 그에 따른 신주의 발행일로,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의 변경 등의 경우에는 해당 기준일로 한다.
- 3. 발행회사의 상장 시 확정된 공모가격의 70%가 상장 직전 기준가보다 낮은 경우, 확정된 공모 가격의 70%로 행사가격을 조정한다. 본 항에 따른 행사가격의 조정일은 발행회사의 상장에 따 른 공모가격이 확정되는 날로 한다.
- 4. 발행회사의 2023 사업연도 재무제표상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 중 어느 하나라도 다음 기준금액의 70% 미만인 경우, 금 사십이만구백팔십구(420,989)원으로 행사가격을 조정한다. 본 항에 따른 행사가격의 조정일은 발행회사의 2023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주주총회 승인일로 한다

기준금액(발행회사의 2023 사업연도 기준)

- -매출액금 426억워
- -영업이익금 69억원
- 5. 위 1.항 내지 4.항에 따른 행사가격의 조정은 중복적으로 적용되고, 조정 후 행사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사하며, 조정 후 행사가격이 보통주식의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보통주식의 액면가를 행사가격으로 한다.

[신주인수권 행사후 발행될 보통주식의 수]

본건 신주인수권이 행사된 경우, 본건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하여 발행될 보통주식의 수는 본건 신주인수권이 행사된 신주인수권증권 권면금액을 최초 행사가격(본건 신주인수권 행사가격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 후 행사가격)으로 나눈 값에서 소수점 이하를 버린 수로 하고,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신주인수권 행사절차]

발행회사에 본건 신주인수권 행사청구서와 해당 신주인수권증권을 제출하고,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신주인수대금을 납입하거나 또는 신주인수권증권의 권면금액에 상응하는 권면액의 사채권으로 다용납입한다.

신주인수권증권의 권면금액 일부에 대하여 행사청구를 할 수 없고, 행사주식의 결산기말 또는

003983

신주배정기준일이 설정된 때에는 당해 기준일 이전 5영업일 간은 행사청구를 할 수 없으며, 행사청구를 접수하지 아니한다.

[신주인수권 행사의 효력발생]

본건 신주인수권 행사절차에 따라 신주인수권 행사청구서와 해당 신주인수권증권을 제출하고 신주인수대금을 현금납입 또는 대용납입 한 때에 본건 신주인수권 행사의 효력이 발생한다. 행사에 의하여 교부된 주식은 행사청구일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본건 신주인수권의 행사 즉시 발행회사에게 신주인수권증권 권면금액 전액을 현금으로 납입하여 야 하며, 이에 갈음하는 대용납입의 경우 신주인수권증권의 권면금액에 상응하는 권면액의 사채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대용납입의 경우 사채권의 권면액 중 1주 미만의 보통주식 단주 상당금액은 주식 발행 시 발행회사가 현금으로 지급한다.

본건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하여 발행된 주식에 대한 배당에 관하여는 본건 신주인수권 행사를 청구한 때가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에 해당 주식이 발행된 것으로 본다.

[의결권]

본건 신주인수권이 행사되는 경우 그 행사로 발행된 보통주식은 정기 또는 임시주주총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의결권을 가진다.

[수권주식의 유보]

발행회사는 본건 신주인수권 행사가 유효하도록 발행된 모든 신주인수권증권에 관한 신주인수권을 수시로 행사하기에 충분한 보통주식의 수를 유보하고 있어야 한다.

[기타 조건]

본 조건에 정하지 않은 대상사채의 조건 및 내용은 관련 법령 및 발행회사의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

사채권자는 대상사채 발행일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만기일 전일까지의 기간(이하 행사기간) 동안 언제든지 신주인수권증권의 권면액의 100프로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입으로 발행회사가 신규로 발행하는 보통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본건 신주인수권을 의미)를 가진다. 이 경우 본건 신주인수권 행사로 발행되는 보통주식의 주당 발행가격(이하 행사가격)은 최초 행사가격 또는 조정후 행사가격(각각 이하에서 정의)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

2021 년 05 월 28 일 발행 2021 년 06 월 02 일 등기

주식 매수선택권

- 1. 일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뜻
 - 1.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상법 제542조의3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의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 또는 주가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부여할 수 있다
 - 2.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에는 그 부여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자격요건
 -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대상자는 회사의 설립 , 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감사 또는 피용자 및 상법시행령 제30조1항이 정하는 관계회사의 이사 ,감사 또는 피용자로 한다. 다만, 회사의 이사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003983

- 4.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법 제542조의8 제2항의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및 주요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회사 또는 제3항의 관계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써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 감사인 경우를 포함한다)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 5. 임원 또는 피용인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 1. 일정한 경우 이사회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뜻
 - 6.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 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임 또는 사직한 경우
 - 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 다. 회사의 파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 라.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 7. 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방법으로 부여한다.
 - 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보통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방법
 - 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보통주식의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방법
 - 다.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방법
-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 8.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 이상 7년 내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내에 사망하거나 그 밖에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 9.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정관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022 년 03 월 31 일 설정

2022 년 04 월 11 일 등기

회사성립연월일

2000 년 01 월 12 일

등기기록의 개설 사유 및 연월일

상업등기처리규칙 부칙 제2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등기로부터 이기

2001 년 11 월 20 일 등기

-- 이 하 여 백 --

관할등기소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등기과 / 발행등기소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수수료 700원 영수함

열 람 용

- * 실선으로 그어진 부분은 말소사항을 표시함.
- * 증명서는 컬러 또는 흑백으로 출력 가능함.
- * 본 등기사항증명서는 열람용이므로 출력하신 등기사항증명서는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열람일시 : 2024년09월05일 09시49분32초